

◦ 제47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회기 : 1996. 3. 6 ~ 3. 12 (7일간)

【 2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년월일 : 1996. 2. 28.

발의자 : 홍재룡의원회 2인

□ 주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양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96. 3. 7 ~ 3. 12)

□ 제안이유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3 】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증개정규약안

제출년월일 : 1996. 2. 1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광역행정 수요증대로 인접시·군이 가입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중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구성단체가 변동되어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
약을 개정토록 함.

□ 주요골자

○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 변경

◦ 당 초 : 8개 시·군 (양주군,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 변 경 : 7개 시·군 (양주군,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군
가평군)

양주군조례 제 호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증개정규약안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중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을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협의회 구성은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 구성은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으로 한다.

행 정 협 의 회 규 약

(개정안)

의정부권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협의회는 의정부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의정부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의정부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 위원으로 참석하여 토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참석)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6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화를 위하여 개최지를 제3조의 시·군 순서에 의거 윤번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정부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각 위원이 지정하는 기획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 제9조 (회의록의 작성) ① 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다음회기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사항의 조정) 회장은 2회이상 협의회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 2(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 공공단체 및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준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정부시 기획담당관이 되며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기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결의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 자치단체가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보칙)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81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88년 1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2년 11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3년 10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4년 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6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